

요약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연금개혁의 정년 연장 조치를 2028년까지 유예함으로써 개혁안의 최종 재개 여부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증대됨. 이번 연금개혁 유예는 EU 준칙 위반과 신용등급 하락, 세대 갈등을 초래함. 이에 대응하여 르코르뉴 내각은 기업에 대해 퇴직 부담금 인상과 고령자 고용 페널티를 강화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 실질 은퇴 연령을 늦추고 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 지난 2025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2026 LFSS)을 통해 2023년에 단행된 연금개혁의 핵심 조치를 2026년 9월부터 2028년 1월까지 유예함¹⁾

- 2023년 연금개혁안이 유예된 것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르코르뉴 내각(2025. 10.~현재)이 예산안 부결과 내각 불신임을 피하기 위해 야권의 강한 요구를 수용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임
- 2023년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은퇴 연령을 64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온전한 연금 수령에 필요한 기여 기간을 43년(172분기)으로 앞당겨 연장하는 강도 높은 모수 개혁을 강행함
- 이 조치로 인해 63세 이상의 정년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1964년생과 1965년 초반 출생자들은 완화된 62세 9개월에 은퇴하게 됨
- 반면 1965년 후반부터 1968년생 등 나머지 세대의 은퇴 연령은 2028년 1월 유예 종료 이후 2023년 연금개혁안의 재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표 1〉 프랑스 연금개혁 2023년 원안과 2026년 유예안의 핵심 조치 변화

출생 연도	2023년 원안		2026년 유예안	
	은퇴 연령	필요 기여 기간	은퇴 연령	필요 기여 기간
1964년	63세	171분기	62세 9개월	170분기
1965년(1~3월)	63세 3개월	172분기	62세 9개월	170분기
1965년(4~12월)	63세 3개월	172분기	63세	171분기
1966년	63세 6개월	172분기	63세 3개월	172분기
1967년	63세 9개월	172분기	63세 6개월	172분기
1968년	64세	172분기	63세 9개월	172분기

주: 2026년 유예안 기준, 1965년생(4~12월)부터 1968년생까지의 세대에 적용되는 은퇴 연령 및 필요 기여 기간은 2028년 1월부터 2023년 연금개혁안을 재개한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결과임

자료: Republique Francaise(2026. 2. 27.), "Suspension de la réforme des retraites : qui est concerné?"

1) Republique Francaise(2026. 2. 19.), "LOI n° 2025-1403 du 30 décembre 2025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6"

- 2023년 연금개혁 중단은 부과방식(PAYGO)을 채택한 프랑스 연금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부분 적립식 연금금을 운용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근로 세대가 납부한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당해 은퇴자의 연금을 즉시 지급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충격이 국가 부채 확대로 직결됨
 - 프랑스의 기존 법정 은퇴 연령(62세)은 독일(66세 2개월), 스페인(66세), 네덜란드(67세), 영국(66세) 등 이미 65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구조적 지출 통제가 시급함
- 이번 연금개혁 중단은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외에도 프랑스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음²⁾
 - 연금개혁 유예로 인해 2024년 기준 GDP 대비 5.8%인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안정·성장협약 준수가 어려워짐
 - 프랑스가 EU의 과도적자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³⁾ 대상국으로 확정될 경우,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EU 기금 지원 축소 등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를 당할 수 있음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러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반영하여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함
 - 영국 싱크탱크 공식통화금융기관포럼(OMFIF)은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프랑스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향후 약 60억~7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출생 연도별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액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는 은퇴 예정자들 사이의 불만과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연금개혁 유예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인상하고, 초과근무 장려를 통해 노동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⁴⁾
 - 르코르뉴 내각은 기업이 선호하는 '상호합의 퇴직' 및 '사측 주도 퇴직' 시 기업이 납부하는 특별 사회보장 보험료 요율⁵⁾을 기존 30%에서 40%로 대폭 상향하여 고령자의 조기 퇴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늘렸음
 - 또한 고령자에 특정하지 않지만 300인 이상 기업이 '숙련 근로자 고용 촉진 계획'에 대한 노사 협상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장 보험료에 추가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250인 이상 대기업까지 초과근무에 따른 사회보장 보험료 정액 공제(시간당 0.50유로) 혜택을 확대 적용하며 노동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연금개혁이 멈춘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 유지 확대와 초과근무 세제 혜택을 병행하여 실질 은퇴 연령을 늦추고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책임

2) Reuters(2025. 10. 18.), "S&P hands crisis-prone France surprise downgrade"; Reuters(2025. 10. 18.), "French-German spread narrows on budget optimism, German bunds weaken"; OMFIF(2025. 10. 20.); "Putting a price on French political turmoil"

3) 과도적자절차는 EU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거나 국가 부채가 GDP의 60%를 상회하는 회원국에 강제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임

4) The Guardian(2025. 10. 14.), "Lecornu backs delaying rise in French retirement age until after 2027 presidential election - as it happens"; Aramis(2026. 1. 9.), "Overview of the Social Security Financing Act for 2026"; GAC Group(2025. 12. 23.), "LFSS 2026: breaking down the key measures for HR and payroll departments"

5) 상호합의 및 사측 주도 퇴직 시 기업이 납부하는 특별 사회보장 보험료는 전체 퇴직금 액수가 아닌, 일반 사회보장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는 '비과세 퇴직 위로금'에 일정한 비율(30% 또는 40%)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임